

Customs Alert

2026년 4월

2026/4월 주목할 만한 지침

2026년 4월, 투자 프로젝트 양도 관련 관세 절차, 환경보호세 신고, 화학물질의 세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세 지침 공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KPMG는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공문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립니다.

투자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고정자산을 면세로 수입한 후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관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XVII구역 세관지국(Dong Nai 관할 세관지국)이 2026년04월01일자로 발행한 제 619/HQKV18-NV 호 공문 (이하 “공문 619”)

- 공문 619에는 세관당국에 대한 양도 사실 통지 절차, 면세 대상 품목 목록의 통지 절차, 양도 대상 품목에 대한 세관 신고 의무 이행 등,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공문 619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 자산의 인식 시점은 양수인이 자산을 이전 받고 관련 세관 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한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는 공문 619에 따라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수 판매를 진행하면서 세관당국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 시 최초 수입신고서에 근거한 세액이 추정되며, 이와 별도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 석유류에 대한 환경보호세 납부 시점과 관련하여 세관국의 지침을 제공하는 2026년4월17일자 공문 제 15374/CHQ-NVTHQ 호 (이하 “공문 15374”)

- 공문 15374에는 환경보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석유류에 대해 환경보호세의 신고 시점과 신고 처리 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 기업이 석유류 사업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 또는 석유류 생산자인 경우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의 판단 기준은 Decree 83/2014/ND-CP의 일부 수정/보완한 Decree 95/2021/ND-CP에 규정됨), 직접 관리 세무당국에 세금 신고서류 제출하고 세금 신고 이행합니다.
 - 기업이 석유류 수입.도매 중심 상인이 아닌 경우, 수입 석유류에 대한 수입관세 신고 시점에 동시에 환경보호세 산정, 신고하고 납부 이행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성분 신고 관한 세관국의 2026년4월14일자 공문 제 15269/CHQ-GSQL 호 (이하 “공문 15269”) 및 제XVIII구역 세관지국 (Dong Nai 관할 세관지국)의 2026년3월31일자 공문 제 608/HQKV18-NV호 (이하 “공문 608”)

- 공문 15269에 따르면, 세관국은 화학물질 통관의 필수 요건으로서 CAS 번호, 각 구성 성분별 함량 비율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100%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요구의 법적 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관국은 이에 대해 각 구역의 관할 세관지국에서 화학물질 수입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공문 15269호가 발행되기 이전에 공문 608호(OL 608)는, 부차적 성분이 비유해성이거나 규제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 성분을 100% 기재하도록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각 지역 세관지국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관세청이 추가 지침을 발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여 화학물질 수입 신고 요건을 선제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KPMG는 향후 세관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지침 문서가 발행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KPMG의 전문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Email: info@kpmg.com.vn

Korean Desk

Kang Shinmok (Ho Chi Minh City)
Director
E shinmokkang1@kpmg.com.vn

Park Seung Hwan (Hanoi)
Senior Manager
E seunghwanpark1@kpmg.com.v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aw Limited, KPMG Services Company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Scan to visit our website: [kpmg.com.vn](https://www.kpmg.com.vn)